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_____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년 __월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성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을 말합니다.
5. “채권확정”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 및 대금지급일을 확정(이하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7.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거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
8.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9.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등 미래채권을 말합니다.
10.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Hana 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1.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채권확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미래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본인은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제 3 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

- 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 본인이 미래대출을 실행하거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취소할 수 없기로 합니다.
- ③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 은행은 취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구매기업의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기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개별대출의 실행)

- ① 원 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과 약정한 발주서 상의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발주서별로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출실행시 발주서 상 발주서만기일로 임시 지정됩니다.
- ④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대출 신청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
- 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 ⑤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 제 2 항 부터 제 4 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2.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⑥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1.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2.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3.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본인 또는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된 경우

6. 원 약정서 제 4 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본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7.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구매기업이 대금지급일에 은행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한 경우
9.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제 7 조 (면책)

-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되어 대출을 받은 경우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

-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 전송된 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취급된 경우에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 년)내에서 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별대출금이 여신기간 만료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④ 이 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본인) _____ (인)

주 소 :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